

EU, 포장재 사용 규제

96년7월 시행 ... 합성수지 내수 · 수출 타격 예상

EU가 96년 7월부터 포장재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대EU 화학제품 수출에 있어 타격이 예상된다.

EU가 마련한 「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에 관한 지침」은 당초 EU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EU 수출제품의 포장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대EU 수출기업과 당국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포장재의 생산 · 유통 · 수거 및 재활용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추가비용부담이 불가피, 국내 전자 · 섬유 등 대EU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. [세부지침 P.40 참조]

EU지침의 기본적 내용은 오는 2001년 6월까지 EU역내 국가내에서 유통되는 포장폐기물의 50~60%, 재생가능 포장재의 25~45%, 기타 재질은 15%이상의 재사용 및 원상회복 달성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.

세부사항을 보면, 포장재 및 포장재원료에 납 · 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98년 6월말까지 600PPM, 99년 6월말까지 250PPM, 2001년 6월말까지 100PPM을 초과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, 수거 · 재사용 · 복원에 따른 포장재 식별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.

규제대상은 EU역내에서 시판되는 가정용 · 산업용 · 상업용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로 육상 · 철도 · 해운 · 항공용 컨테이너는 제외된다.

이에따라 유럽 각국들은 EU지침을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인 규제방안 외에도 별도의 강제적인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지침의 실시에 따라 EU국가들은 포장재의 수거 · 재사용 · 복원에 따른 식별을 위해 96년말까지 표시제도를 도입하며 부적합 포장재는 98년부터 EU내 유통을 금지한다.

유럽표준화기구(CEN)는 이에따라 포장재의 원료 · 제조공정 · 소비 및 폐기 등 수명주기분석의 기준과 방법, 중금속 및 여타 유해물질의 측정, 재생원료의 최소용량기준, 재생성분, 표시제도 등의 표준을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.

EU집행위원회 및 회원국은 지침 준수여부의 상호감시를 위해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의 특성 및 유통과정 등의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 베이스도 98년 7월까지 구축하며 소비자 정보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.

이번 지침은 일종의 지시사항으로 EU회원국은 96년 6월까지 자율적인 규정을 시행토록 돼 있어 국별 규제조치가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이에따라 수출시 국별 포장요건의 차이에 따라 생산조건이 불리해져 시장접근이 제한되거나 다양한 포장요건에 의한 유예기간정도에 따라 직 · 간접적인 무역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.

또 현재 주요 수출포장재로 사용되는 합성수지가 재생용이거나 저품질로 사용감축이 요구되며 제조공정상 플라스틱 첨가제의 감축,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개발 등 신제품 개발 노력, 나아가 종이포장재에 있어 표백공정에서 염소계 약품 사용억제, 재활용지 적극활용, 잉크제거가 용이한 공정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.

한편, 관련업계와 통상산업부 ·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은 조만간 수출기업과 포장재 생산기업 등 단체들과 협의회를 구성, 국별 규제조치에 대한 국내업계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1995/7/10>